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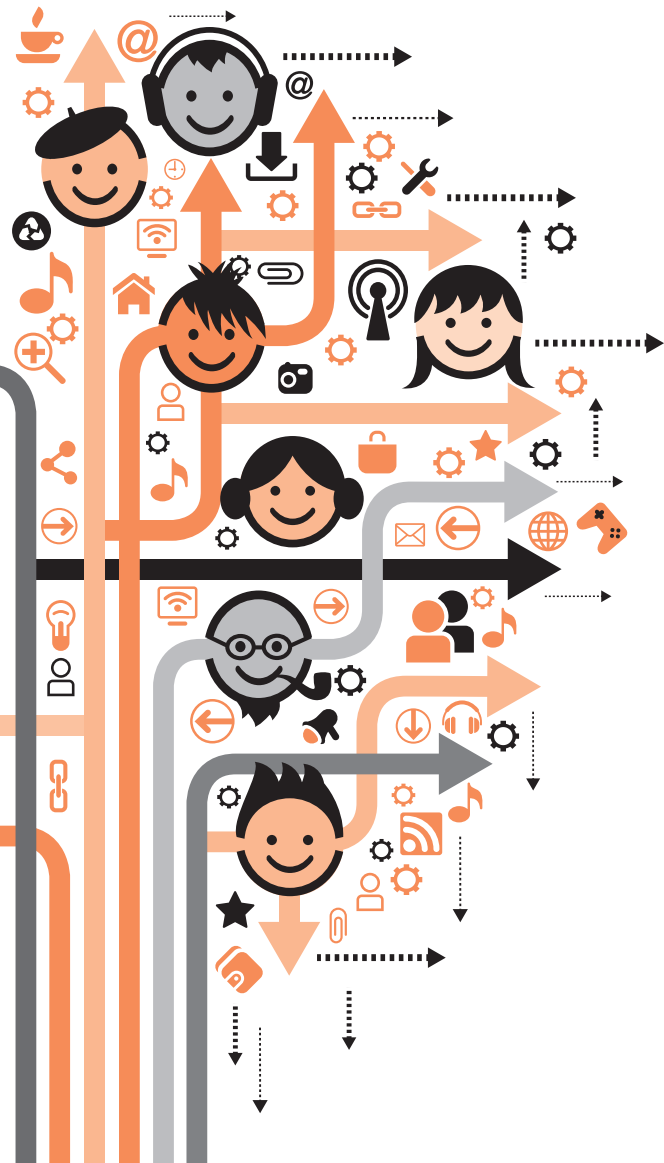
류정아 문화예술연구실장 ryooja@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과 서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개진되고 서로 경쟁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세계화로 획일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 성장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세계인권선언(1948), 유엔사회권위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1992) 등에 이어 2001년 10월, 유네스코 31회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문화 획일화에 대응한 문화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그 후 프랑스를 위시한 8



개 국가(프랑스, 캐나다, 독일, 멕시코, 세네갈, 모로코, 모나코, 그리스)는 2003년 3월 제166차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집행 이사회에 '문화협약 추진' 의제를 발의하였으며 이것이 유네스코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어 10월 제32차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협약 제4조 1항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된 방식 이외에도 각 집단과 사회의 예술적 감수성이 유통되는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표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문화주권은 국민,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 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고,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와 관용,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이며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문화시설 조성, 교육 및 홍보, 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문화다양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매년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수 인종 · 종교 · 성별 등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수자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러 노력과 시도를 하였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및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차이’, ‘다문화이주민 · 노인 · 장애인 · 청소년 ·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의 갈등’, ‘농어촌과 도시 문화의 격차’ 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제는 ‘공간 내 공존’에서 ‘상생적 연대성 제고’로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점유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면서 화학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수자 발언권 강화와 SNS의 발달

문화다양성은 단지 정치적 ·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다. 문화다양성이 국가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은 탈냉전, 세계화, 초국적화에 따른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이동과 혼종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국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동인구와 결혼이주민 여성들의 유입도 사회적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신체, 거주 지역 등의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 정의할 수 있다¹.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양성에 대한 개방된 태도가 요구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고 수용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 인종 · 종교 · 성별 등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수자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러 노력과 시도를 하였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문화 자본 독점에 따른 문화소비 획일화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비주류 문화, 틈새 문화(독립영화, 인디음악 등)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비주류, 소외된 영상 예술가들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영화 배급사의 독점적 상영 점유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례이다.

¹ 이준일, 2014, 상권 헌법과 소수자 보호,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43권 0호, p.12

² 김희연 · 오주현, 2012,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방송통신정책, 24(12), pp. 19-42 참조

세계 각국에서 저예산 독립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비주류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권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강력한 문화 상호작용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방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가 활용되고 있다. SNS의 대표주자인 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Foursquare, Linked in, Telegram 등의 가입자 수는 2014년 기준 각각 약 1억~9억 명에 달해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과 쉽게 인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었다².

3. 공간 내 ‘공존’에서 질적인 ‘상호작용’으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노동, 가족, 결혼, 소비생활, 교육, 일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구성과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노동이주민 및 결혼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는 2000년대 중요한 어젠다 및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성’을 문화가 지닌 보편적 본질로 인식하고, 단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즉, 소수자 문화를 더 이상 ‘온정주의적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그 자체를 문화의 본질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문화’는 근대역사에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단일인종·문화 국가에 다인종·다민족이 유입되거나 처음부터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출발한 국가들이 처한 사회·역사·정치적인 문제들, 즉, ‘특정 시공간에서 다양한 인종·민족·종족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용어이다³. 반면, ‘문화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다양성이 문화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다문화에서 광의의 문화다양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성’을 문화가 지닌 보편적 본질로 인식하고, 단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³ 김수이, 2013,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연구, 6(1), pp.33-57

⁴ 여성가족부,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책임연구: 안상수), pp. 43-45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다양한 종교·인종·문화 공존에 대하여 유럽 18개국 응답자 중 약 74%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 중 약 64%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1990년대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외국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2000년대는 결혼이주민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990년대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으로 외국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2000년대는 결혼이주민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한국사회 적응과 동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2010년대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다양성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사업 정도로 인식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심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책적 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결혼이민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었으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의식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⁴. 다문화 정책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위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진 외국인의 소외현상과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⁵.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 대상은 소수의 시혜적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차이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관점의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부처에서 해외이주민과 탈북자 중심 정책사업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소수자별 문화다양성 현황을 지수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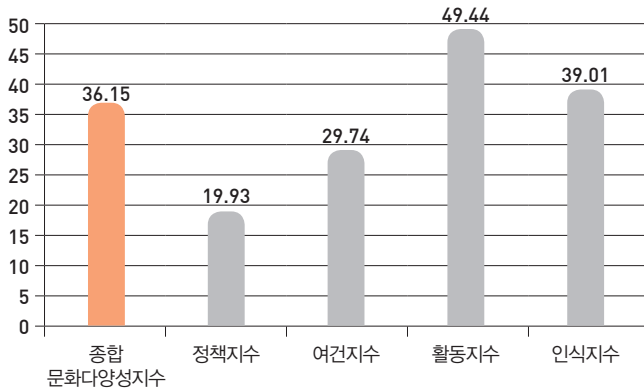
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 분석 결과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5)’에서는 문화소수자 집단의 문화다양성 지수가 산출되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등의 범주별로 문화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수 값을 얻어내기 위한 지표로는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 등이 산정되었다. 지표별 지수 값을 각각 비교하면, 정책지표는 19.93, 여건지표는 29.74, 활동지표는 49.44, 인식지표는 39.01이다. 모두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지표별 문화다양성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⁵ 연합뉴스, 2014.09.19, ‘결혼이주자·귀화자 중심...다문화정책 배타성 내포’

그림1 대분류 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소수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수자들이 직접 대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지표는 49.44인 반면,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소수문화에 대해 가지는 인식 정도는 39.01로 더 낮았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100점 만점에 39.01이라면,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문화다양성 지수는 상당히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활동지수와 인식지수가 각각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출된 값임을 고려했을 때, 활동지수에 비해 인식지수가 낮은 것은 소수자들이 체감하는 수준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다양성 수준이 더욱 저조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수를 산출해보면, 친밀도 43.19, 수용도 42.19, 필요도 47.53, 포용도 31.33, 평등도 31.86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포용도와 평등도가 문화다양성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포용도는 31.33, 평등도는 31.86으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수를 산출해보면, 친밀도 43.19, 수용도 42.19, 필요도 47.53, 포용도 31.33, 평등도 31.86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포용도와 평등도가 문화다양성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포용도는 31.33, 평등도는 31.86으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문화다양성 국민인식지수 세부 지표별 비교

